#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2666 |
|---|---|

발의연월일 : 2025. 6.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 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군 의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정비(안 제5조~제8조)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로, “군민”을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하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군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군 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
   나.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다. 그 밖에 군에 소재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6.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육진흥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을 “군수가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달성군체육회장”을 “군 체육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이 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 군 체육회장 및 군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 제목 “(의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을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을 “작성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확보·지원하기 위하여”를 “확보·지원 등을 통해 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군의”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진흥기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로 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체육 진흥”을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체육회”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회”로 한다.

제24조 중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 활동”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제26조 중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27조 중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br>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br>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br>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br>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br>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br>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br>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하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을 말한다. |

| | |
|---|---|
|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여가 선용,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br>6.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br>7. “체육단체”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군 체육회, 군 관내 각 읍·면 지회와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 5. “체육단체”란 군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br>가. 군 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br>나.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체육단체<br>다. 그 밖에 군에 소재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br>6.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신 설> |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② 체육진흥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

| | |
|---|---|
| | 한다. |
|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 |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br>1. · 2. (생 략)<br>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기능)** ----------.<br>1. · 2. (현행과 같음)<br>3. ------ 군수가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 |
|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달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5조(구성)** ① ---------- 군 체육회장----------. |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달성군체육회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이 된다. |
| ③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장----------. |
| 1. 당연직 : 달성군체육회장, 체 | 1. 당연직 : 군 체육회장 및 군 체 |

| | |
|---|---|
| 육업무 담당국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업무 담당팀장<br>2. 위촉직 :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사람,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육업무 담당국장<br><br>2. 위촉직<br>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br>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br>다. 그 밖에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br>② (생 략)<br>③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br>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장 ----------<br>----------<br>----------<br>-.<br>② (현행과 같음)<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 | |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
|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
|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삭 제> |
|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간사 등)** ①·② (생 략) | **제9조(간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 ③ ---- 위원장----------. |

| | |
|---|---|
| 간사를 도운다. | |
|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④ ---------- 작성 및 ------. |
|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체육발전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 ---------- 확보·지원 등을 통해 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1. -------- 군의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 담당 부서장 및 기금운용과 체육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 | ③ ---------- ---------- ---------- ---------- ---.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

| | |
|---|---|
| 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 기금----------.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재적위원 과반수 ---------- 출석위원 과반수----------. |
|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② (생 략) |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③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 |
|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 |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9.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진흥---------- |

| | |
|---|---|
| 10. · 11. (생 략) | 10. · 11. (현행과 같음) |
| 12.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 1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
| 1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삭 제>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③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 활동----------. |
| **제25조(지원사업)** ① (생 략) | **제2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 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제26조(사전협의)**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 **제26조(사전협의)** 체육단체---------- |

| | |
|---|---|
|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
| **제27조(보고 · 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보고 · 검사)** ---------- ----- 체육단체---------- ---------- ---------- ----------. |
| **제2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국민체육진흥법(법률)」(2025.3.25.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 · 도체육회 및 시 · 군 · 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 · 도장애인체육회 및 시 · 군 · 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보고 · 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